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 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3)
-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장려금·생활보조금의 환수근거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 1)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의 환수근거를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 2)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스포츠관련 업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항 제6호)

마.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 일부 개정 및 조문 이동(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현행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제15조의2)을 안 제18조의2로 조문 이동

2) 현행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제15조의3)을 안 제18조의3으로 조문 이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의 종류,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4)

사. 법 개정에 따른 행정소요 반영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44조 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3항, 제44조의3 제2항,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1)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자격 취소·정지,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위탁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체육지도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와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5 ~06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을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제15조의2를 제18조의2로 하고, 종전의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을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제18조의3으로 하고, 종전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을 삭제하고, “법 제14조제5항 전단”을 “법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종전 제2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과 “관보 또는”을
삭제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18조의7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
중지되는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체육지도자연구비
2. 그밖에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려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려금

② 제1항의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장려금을 포함하여 그가 받은 장려금을 환수한다.

③ 제1항의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지급하여야 할 장려금이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8조의7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 금액
3. 납부 기한
4. 납부 기관
5. 납부 방법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수대상자가 환수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나 독촉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장려금 환수 및 지급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10호를 신설하고,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과정의 시행·관리
5.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7.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접수, 확인
8. 제15조의7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접수, 조치사항 통보
9.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6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10.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확인 및 이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8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제44조의3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u>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u>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u> 배치하거나-----.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u> <u>2. 잘못 지급된 경우</u> ⑥ <u>제5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u>
<u><신 설></u>	

제18조(자금의 용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5. (생략)

<신 설>

제15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제15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용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제18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 조문이동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

-----.

1. ~ 3.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
여야 ----.

※ 조문이동

제18조의4(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18조의7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 중지되는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체육지도자연구비

2. 그밖에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려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려금

② 제1항의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장려금을 포함하여 그가 받은 장려금을 환수한다.

③ 제1항의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지급하여야 할 장려금이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8조의7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 금액

3. 납부 기한

4. 납부 기관

5. 납부 방법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수대상자가 환수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나 독촉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장려금 환수 및 지급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과정의 시행·관리

5.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7.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접수, 확인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8. 제15조의7에 따른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접수, 조 치사항 통보 9.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6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10.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 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확인 및 이를 위한 자료 제공 요 청, 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 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체육 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 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8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 ----- ----- -----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사무
<신설>	5.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신설>	6.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신설>	7. 법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 · 제3호 ·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따른 ----- ----- ----- ----- -----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 -----.

<u><신 설></u>	<u>제3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u>
---------------------------	--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였 던 사람을 포함 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 였던 사람을 포 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였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

던 사람을 포함한다)	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 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자격검정: 해당 없음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과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는 사람		
------	--	--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5.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을 것	
--	---	--

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 였던 사람을 포 함한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였 던 사람을 포함 한다)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 종목의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u>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 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 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 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 시험

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 였던 사람을 포 함한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u>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른 종목의 자격 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8. 노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자격을 가 지고 보유한 자 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 격을 취득하려 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 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u>스포츠윤리센 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 간)</u>
전문스포츠지 도사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 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자격 을 가지고 동 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구 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 기 및 구술시험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 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3호 의 비고에서 다 른 종목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 람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 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 도사 자격을 가 지고 보유한 자 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 격을 취득하려 는 사람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 기 및 구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도사 특별 연수과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12 (044) 203 - 3130